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지난 3년간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건교부가 지난 5월 17일 공포했다.


그동안 일반·전문·설비 등 각 주체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회 통과까지 우리협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6대 집행부가 들어선 2005년 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일반·전문 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전격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협회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회·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설비건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논리와 자료를 통해, 겸업제한 폐지의 부당함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번 개정된 건산법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기계설비가 건설업의 중심축인 토목·건축·기계·전기 중의 하나인 중요 공종으로 확실히 각인시키는 성과와 함께, 정부와 입법기관에 작지만 강한 협회로 인정받는 성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비용 사후정산제도의 민간공사 시행,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참여,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우리업계에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겸업제한 폐지에 대하여 기계설비업만 4년간 유예된 것은 기계설비업의 기술적 특성을 인정받은 대단히 큰 성과로 분석되어진다.

비록 4년의 유예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유예기간 동안 기계설비업의 분리발주 등 우리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숨가쁘게 논의되어 온 건산법 개정안은 전국 시·도회장과 회원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도 우리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기대효과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의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설비공사업은 시행시기를 2011년 말까지 유예</li> <li>• 이 기간동안 우리협회는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및 원도급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전 준비</li> <li>• 회원사도 충격완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 등 사전준비기간으로 활용</li> <li>• 기계설비업만 유예된 것은 기계설비의 기술적 특성을 정부와 입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큰 성과임</li> </ul>
	단, 기계설비공사업은 4년 유예	2012.1.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의무화	민간발주공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 및 납입 보험료 정산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료 공사금액 미반영 건설사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li> <li>• 우리업계 원가부담의 가장 큰 요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민간공사까지 사후정산제도 도입(공공공사는 2007.1.1부터 시행 중)</li> </ul>
단순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 허용	200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li> <li>•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과 발생</li> </ul>
하도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된 하도급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는 과태료(500만원) 부과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계획 제출 및 적정성 검토 의무화</li> <li>•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계약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예정자, 하도급예정금액을 명시토록 하여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저가하도급 방지</li> </ul>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원도급자의 파산,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경우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파산 등 사유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을 법적으로 확보</li> </ul>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시참자에 의한 다단계하도급, 임금체불 방지 위해 시참자제도 폐지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업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일반건설업자가 우리 회원사를 배제하고 시참자와 직접 하도급계약 체결 우려(시공참여자제도 악용 우려)</li> <li>• 향후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시 성과급제도 도입 등으로 회원사의 인력관리에 불편 없도록 대책 강구</li> </ul>